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
	보도	2021. 12. 31.(금) 조간	배포 2021. 12. 30.(목)
담당부서	보험감독국	양해환 국장(02-3145-7460), 정영락 팀장(02-3145-7471)	
	손해보험협회	최윤석 본부장(02-3702-8523), 김영산 부장(02-3702-8590)	

제 목 :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「자동차보험 표준약관」을 개선*하였습니다.

* 「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」(관계기관 합동, '21.9.30.) 후속조치

- 금융감독원은 마약,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, 선량한 소비자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,
 -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「자동차보험 표준약관」을 개선하였습니다.

《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》

- ① 마약·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·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(최대 1억 5천만원) 신설
- ② 음주·무면허 운전·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
(음주운전: 최대 1천 5백만원 → 최대 1억 7천만원(1인당), 의무보험 기준)
- ③ 군복무(예정)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→ 사망·후유장애 보험금 증가
- ④ 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(중간이자 공제)을 복리방식(라이프니츠식)에서 단리방식(호프만식)으로 변경 → 사망·후유장애 보험금 증가
- ⑤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

1 개선 배경

- '21.9.30.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·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「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*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*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,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, 상실수익액 개선 등 국민 편익 제고방안 등 총 13개 과제

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고부담금 강화,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* 하고 '22.1.1. 부터 시행합니다.

* 금감원은 그 동안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 예고(입법예고 기간 : '21.11.5. ~ '21.12.15.(40일)),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

2 주요 개선내용

가. 마약·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

- (현행) 마약·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.

(참고) 마약·약물운전 사고 사례

- ◆ '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
 -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, **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**

- (개정) 음주운전과의 형평성,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·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합니다.

- 이에 앞으로는 마약·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

마약·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내용

구 분	현행	개정
의무보험 ¹⁾	-	-
임의보험 ²⁾		1억 5천만원(대인Ⅱ 1억원, 대물 5천만원)

1) 대인Ⅰ 및 대물(가입금액 2천만원 이하) 2) 대인Ⅱ 및 대물(가입금액 2천만원 초과)

나. 음주·무면허 운전·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

- (현행) '20.10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*한 바 있으나,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.

* 대인배상Ⅰ : 3백만원 → 1천만원, 대물배상(2천만원 이하) : 1백만원 → 5백만원

- (개정)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(대인Ⅰ, 대물 2천만원 이하)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*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* '21.7월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개정사항 반영

음주·무면허운전·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상향 내용

구 분		현행		개정	
사고유형		음주운전	무면허·뺑소니	음주운전·무면허·뺑소니	
사고 부담금	의무 보험	대인Ⅰ	1천만원	의무보험 한도* 내 전액	
		대물	5백만원		
	임의 보험	대인Ⅱ	1억원		좌동
		대물	5천만원		좌동

* 대인Ⅰ → 사망·후유장애(1급) : 1억5천만원, 부상 : 3천만원(1급) ~ 50만원(14급)
대물배상 → 손해액 2천만원 이하

다.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

- **(현행)** 그간 군복무(예정)자가 차사고로 사망·후유장애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(약 월53만원)를 기준으로 보험금(상실소득액)을 산정하여,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.
- **(개정)** 군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(약 월282만원)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군복무(예정)자 사망·후유장애시 보험금이 대폭 증가*합니다.

* (기존) 약 915만원 → (개선) 약 3,260만원, 약 2,345만원 증가

라. 상실수익액 산정 할인율(중간이자 공제) 적용방식 개선

- **(현행)** 법원·국가배상법은 보험금(상실수익액) 산정시 단리방식(호프만식)으로 하나,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(라이프니츠식)을 적용하여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.
- **(개정)** 자동차보험도 법원·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(호프만식)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, 사망·후유장애에 따른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*합니다

* (예시)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 : 복리방식(약 2.9억원) → 단리방식(약 4.5억원)

마.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기준 명확화

- **(현행)** 그간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한 보상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.
- **(개정)**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*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,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*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(안전모, 에어백 포함), 다만 유사 일반의류(라이더 가죽자켓·팬츠 등)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보상 제외

3 | 시행일

□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'22.1.1.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*됩니다.

* '22.1.1. 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·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 적용

○ 다만,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시행시기에 맞춰 '22.7.28.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.

□ 한편, 금번 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*은 보험업계의 보상 Process 개선** 등을 거쳐,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'23.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됩니다.

* (대인 π 치료비 과실상계)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(자기신체사고 담보 등)으로 보상 (진단서 제출 의무화) 경상환자가 장기간(4주 초과)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

** 금감원·손해보험협회·업계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에서 '22년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

표준약관 개선 내용별 시행시기

개선 내용	'22.1월	'22.7월	'23.1월
▶ 마약 사고부담금 신설, 상실수익액(군인, 호프만식) 개선, 이륜차 전용의류	[Blue bar spanning from '22.1월 to '23.1월]		
▶ 음주 운전 등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상향	[Blue bar spanning from '22.7월 to '23.1월]		
▶ 경상환자 대책(치료비 과실상계,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)	[Blue bar spanning from '23.1월 to '23.1월]		

4 | 기대효과

□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,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또한, 상실수익액 개선 및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제고되어, 자동차보험의 사적(私的)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① 마약·약물 운전시 사고부담금을 신설한 배경은?

☞ 현행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등으로 車사고시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, 마약·약물을 복용하고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(대인·대물배상)에서 전액 보상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.

이에 음주운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,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·약물운전 사고에 대해서 사고부담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.

② 음주 등 사고부담금 상향 관련 개정 사항이 '22.7.28.부터 적용되는 이유는?

☞ '21.7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」(법 제29조)이 개정된 바 있으며, 동 개정내용을 '22.7.28.부터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③ 군복무(예정)자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을 개선한 이유는?

☞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복무(예정)자가 군 면제자에 비해 손해 배상액이 더 적어지는 문제*가 있어, 보험금 산정시 군 면제자와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* 군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고,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(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)

앞으로 車사고로 군복무(예정)자가 사망시 군 복무기간 중의 상실 수익액이 약 2천3백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군복무(예정)자의 상실수익액 계산 예시>

※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,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

- ▶ (군복무 예정자) 교통사고로 만 19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(현역병 육군 18개월 복무가정)
 - (현행) 병사급여(약 53만원) ×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츠계수 (17.3068) = 약 915만원
 - (개정) 일용근로자 임금(약 282만원) ×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(17.3221) × 생계비 공제(2/3) = 약 3,260만원(약 2,345만원 ↑)

4 상실수익액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선 효과는?

☞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이 현행 약 2.86억원(복리방식)에서 약 4.48억원(단리방식)으로 늘어나는 등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지급보험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상실수익액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선효과 예시>

※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,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

- ▶ (사례) 교통사고로 만 11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
 - ①월소득액(일용근로자 임금 적용): 약 282만원, ②생계비(월소득액 1/3): 약 94만원, 취업가능기간(만 65세 적용): 552개월, ③라이프니츠식 계수(현행), 호프만 계수(개정)
 - (현행) (282만원(①)-94만원(②))×152.1982(③) = 약 2.86억원
 - (개정) (282만원(①)-94만원(②))×238.4762(③) = 약 4.48억원(약 1.6억원 ↑)

5 라이더 가족 자켓도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에 해당되는지?

☞ 금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상되는 이륜차 의류는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위해 인명보호장구로서 피해 경감 효과가 인정되는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로 한정합니다.

따라서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(예시: 바이크 전용슈트) 등은 보상이 가능하지만, 라이더 가족 자켓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